

##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tents Technology

권 상 로

조선대학교

Kwon Sang-Ro

Chosun University

#### 요약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례나 학설을 통해 종래의 불법행위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실·계약법제가 엄격책임의 법제로 대체되어 엄격책임을 지게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은 학설·판례에 맡기었던 제조물책임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유럽국가들은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계약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의 핵심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결함만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 I. 서론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제품이 계속적으로 생산됨과 동시에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입법 당시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그리고 제조물의 범위, 결함의 개념과 입증책임의 소재 그리고 면책사유의 인정한계 등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반영하여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이에 앞서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의 결함, 면책사유의 인정한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분석을 토대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방식은 ① 민법의 개정

방식, ② 소비자보호법의 일부로 구성한 방식, ③ 독립된 특별법 방식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다음에서는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일본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미국과 EC지령의 영향을 받아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법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1990년 가을에 사법학회법무회의 심포지엄에서 보고된 “제조물책임 입법화에 대한 제안”은 특히 EC지령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제조물책임법을 참조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입법화의 흐름을 구체화 한 것은 1993년 가을에 계속해서 발표된 정부심의회 의 답신과 보고였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은 1992년에 발표된 제13차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정부 각 부처의 보고를 받아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데 최종결론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기 때문이었다.

1993년 12월,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조물책임제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소비자피해 방지·구제방법에 대해서”라는 보고서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구성, 각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나중에 제조물책임법안의 기초가 되었다.

1994년 6월, 일본 국회에서 성립된 제조물책임법은 1993년 12월부터 1994년 4월까지 당시 호소가와(細川)내각의 연립여당내에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PL법 연립여당프로젝트”와 관계관청으로 조직된 9성청(省庁)연

락회의에 의해 구체적인 조문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조물책임, 제4조 면책사유, 제5조 기간의 제한, 제6조 민법의 적용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 2. 독일

### 2.1 제조물의 범위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제조물의 개념에 대하여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동산과 전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미가공된 농업적 자연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유럽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광우병의 영향으로 2000년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하여 미가공된 농업적 자연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 2.2 제조물의 결함(Fehler des Produkts)

독일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 제1항은 제조물결함의 판단기준이 되는 '결함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을 결여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 2.3 제조자(Hersteller)

독일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 주체는 실제 제조자, 표시제조자, 수입업자 및 공급업자이다(독일 제조물책임법 제4조). 완성품제조자뿐만 아니라 그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자도 동법 제4조 제1항의 '제조자'에 해당한다. 제조물에 성명,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그와 같이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표시제조업자로 지칭한다. 표시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지게 한 것은 신뢰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수입업자를 제조물책임 주체로 하는 것은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피해자가 외국의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물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에게도 보충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고 있다.

## III. 결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된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호).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

위험의 향변을 무제한적으로 모든 결함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존재이유의 하나인 소비자보호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등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당시부터 개발위험의 향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발위험의 향변이 쉽게 인정되어진다면 실질적으로는 과실책임으로 복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무과실책임을 지우도록 한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기 때문에 개발위험의 향변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향후 개발위험의 향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을 인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된 해석이 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1]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681&news\\_div\\_cd=2](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681&news_div_cd=2)
- [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결함제조물책임법안 심사보고서」, 1999, 7면.
- [3] 北川俊光, “製造物責任法の逐条解説-製品安全対策の在り方をめぐって”, 『法政研究61권3·4호』, 1995, 676~677면.
- [4] 전경운,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에 관한 일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6면.
- [5]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37호, 2010, 3면.